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난 9월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 개편,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안 제2조의2)

- 1) 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계획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함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의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 상제화

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안 제2조의3)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수립·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추가함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안 제2조의5)

- 1) 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2항에서 관할청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함

- 2)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는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안 제9조의4)

- 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 개정 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존의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수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자격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을 개정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안 제17조)

- 법 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위임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내용 및 시기 등 명시

사. 비밀의 범위 (안 제18조)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3.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및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중전의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을 “시행계획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3(중전의 제2조의2)의 제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으로 한다.

제2조의4(중전의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형법」 제2편 제25장”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안”을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사안”으로 한다.

제2조의5(중전의 제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침해행위”를 “침해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각각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는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3조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존중하여야”를 “존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처리하여야”를 “조사·처리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정보를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으로 ‘교육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 대상 아동 학대 신고 사안 정보를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교육활동 침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를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로,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을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법 제25조제2항제7호”로,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법 제25조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법 제25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7명 이상 10명”을 “10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5명 이상 10명”을 “10명 이상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학교의 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을 “교육지원청 관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 학생”을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의 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각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각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학교규칙으로”를 “교육장”으로 한다.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으로 한다.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약관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 침해학생 등과 피해교원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9조(중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전의 제5호)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중 “(제18조 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	100	150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 ----- ----- ----- 노력해야 ----.
<신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u>사항</u> 3.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및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에 관한 사항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 ① -----
1. ~ 3. (생략)	-----
4.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
5. (생략)	-----
<신설>	제15조제1항-----
	----- 시행계획을 법 제18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제1항-----	4. 법 제21조제1항-----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	6.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

	<u>영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3. (생략)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	제2조의5(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

<신 설>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
조치의 방법·기간·장소는 관할
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의장이 결정한다.

③ 법 제20조 제5항-----

침해 행위-----

1.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5항 -----

----- 제3항 -----

1. 법 제20조제5항 -----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나. (생략)

2. (생략)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20조제5항 ---

⑥ 제3항부터 제5항-----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

- 통보해야 ---

한다.	----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	③----- ----- <u>노력해야</u> -----.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u>고려하여야</u> 한다.	②----- ----- <u>고려해야</u> -----.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생략)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u>존중하여야</u> 한다.	②----- ----- <u>존중해야</u>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	③----- -----

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u>조사·처리하여야</u> 한다.	----- ----- ----- <u>조사·처리해야</u> -----.
제9조의2(실태조사) ① <u>법 제16조의2제1항</u> 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u>법 제16조 제1항</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8조제1항</u>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3. <u>법 제25조제2항</u> ----- -----
<u><신 설></u>	4. <u>법 제26조제2항</u>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u>법 제16조의3제1항</u>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u>법 제24조제1항</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4(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u>법 제1</u>

	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를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 대상 아동 학대 신고 사안 정보를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확인서를 바탕으로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 법 제29조제1항----- ----- 교육활동보호센터-----.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5.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5조제2항 ----- ----- -----. -----. 1.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 법 제18조제2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 <삭 제> 3. 법 제25조제2항제7호----- ----- 법 제18조제2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 --
---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
--- 법 제25제2항제6호-----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법 제25조제2항제7호-----

-----.

제11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 4. (생략)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 8. (생략)

④ ----- 법 제31조제1항-----

-----.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1항-----

----- 10명 이상 20명 -----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학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

----- 법 제18조제1항제2호-----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 10명 이상 50 -----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교육장-----

-----.

1. -----
----- 교육지원청 관할 -----

2. (생 략)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생 략)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생 략)

③ (생 략)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 (현행과 같음)

3. ---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4. (현행과 같음)

5. --- 교육지원청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1. 교육장-----

2. (현행과 같음)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하는 경우	-----
⑤ <u>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u> 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 ----- ----- 과반수----- ----- -----.
⑥ <u>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u>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 -----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u>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u>학교규칙으로</u> 정한다.	⑦ ----- -----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 ----- ----- ----- <u>교육장이</u> ----- --.
<신 설>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u>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u>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u>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u>지역교권보호위원의</u> 위원으로 한다.
	③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 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

	<u>위원회에</u>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u>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u> 본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u>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u>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장이</u> 정한다.
제16조(<u>학교교권보호위원회</u> 위원 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u>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u>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u>지역교권보호위원회</u> 위원 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u>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u> 법 제18조제2항제2호 ----- ----- -----.
② <u>학교교권보호위원회</u>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 ----- ----- -----.
<신 설>	제17조(<u>교원보호공제사업</u> 관리 및 운영)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u>교육감은</u> 매 학년도 시작 전에 <u>약관과 시행계획을</u> <u>교육부장관</u>

<신 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 침해학생 등과 피해교원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제19조(권한의 위임) ----- -- 법 제33조----- ----- --. 2. 법 제20조제1항----- -- 3. 법 제20조제3항----- -- 4. 법 제20조제4항----- --

4.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5. 법 제20조제5항 ----- -- 1. 법 제16조제1항----- -- 6. 법 제25조제5항----- ----- ----- ----- 7. 법 제35조제2항-----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7